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 FOUR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양성
교육연구단’ 관리 운영규정

제정 2020. 12. 31.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BK21 FOUR 사업 지원을 받은 연세대학교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에 적용한다.

제 3조(사업기간) ①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1일부터 2027년 8월 말까지로 한다.

제 2 장 교육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제 4조(교육연구단 목표)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은 교육과 연구, 제도개혁을 통해 우리나라가 ‘공정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를 양성에 초점을 둔다.

제 5조(조직구성)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 운영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단의 연구 방향, 교육 과정, 운영 등에 대한 기획 및 지원한다.

제 3장 참여교수

제 6조(교육연구단의 장)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 8조(교육연구단의 장)를 준용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8조(교육연구단의 장)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선정된 교육연구단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② 사업의 지원을 받는 교육연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참여 학사조직의 장을 겸할 것을 권장한다.

④ 대학 및 교육연구단은 휴직,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교육연구단의 장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연구단의 장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교육연구단의 장은 본 지침 제10조에 따른 참여교수 변경 예외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1년 이내의 연구년 중인 교수 중 국내(6개월 이내의 국외) 연구 수행으로 교육연구단의 장 직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단의 장 직위를 변경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교육연구단의 장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직을 변경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연구단의 장이 사망하여 변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계속한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 활동, 1년 이내의 파견 등으로 인해 교육연구단의 장이 부재 시에는 대학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단장을 변경하거나 참여교수 중 한명이 교육연구단의 장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⑧ 교육연구단의 장은 4단계 BK21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책임자 및 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연구과제의 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선정 전 기 수행 중인 경우에 한해, 사업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연구책임자의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의 장을 겸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9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를 준용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 제9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라고 한다.)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해당 대학에서 근무기간을 전일제(全日制)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재임용 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재임용 횟수가 제한되었거나, 학과 학생 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어학원·연구소 등 소속으로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 되어 있지 않은 교원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참여교수는 학사과정의 학과와 대학원과정의 학과가 동일한 소속이어야 하며, 동일한 소속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과정의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받아야 한다. 다만, 혁신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해당 학과(융합전공 포함)에 겸임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
- ③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단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 제 8조(참여교수 선발)** ① 참여교수는 소속 교수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본 교육연구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신입교수는 참여교수와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하되, 이에 따른 예산은 대학 자체대응기금으로 충당한다.
- ③ 외국대학과 국내대학에 겸직(전임)하는 교수의 경우, BK21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신청 학과(부) 참여교수 비율 산정 시 모수 산정(70% 이상 요건)에서도 제외된다.

제 9조(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0조(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를 준용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 제10조(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연구단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중간평가 이후는 재선정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 ③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지침 제9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④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연구단의 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업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연구단과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망·퇴직·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6개월 이

내 참여교수 충원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 장 참여대학원생

제 10조(참여대학원생)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 11조(참여대학원생), 별표2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을 준용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1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신청 학과(부)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참여대학원생이 휴학·취업·졸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일 교육연구단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의·치·한의학 분야의 참여대학원생 중 기초교수 지도학생 비율은,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중 기초교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5.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기간 중 교육연구단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 한 사람(단, 제13조에 따른 지원대학원생으로의 선발은 불가)
6.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학연협동과정생
7.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
8. 의·치·한의학 분야에서 동일 대학 소속의 4대 보험 가입자인 기초전공의와 의사조교

④ 제3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단의 장이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만약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원생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의 장은 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단,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⑧ 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⑨ 자격증 대여 등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⑩ 교육연구단의 장은 외국인 대학원생이 교육연구단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⑪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전원이 사업 참여교수인 경우에만 한하여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공동 지도교수 중 일부가 타 학과 소속인 경우는 해당 타 학과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교수 전원의 사업 참여 조건을 적용한다.

별표2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

| 구분 | 자격 기준 | 비 참여 대학원생의 유형 | |
|--------|--|---|--|
| | | 내용 | 조치 사항 |
| 1) 소속 | 교육연구단 소속 참여교수의 신청학과(부) 소속 지도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학생 : 사업기간에 휴학한 경우 ◦ 제적생 : 사업기간에 제적된 경우 ◦ 비참여교수의 지도학생 ◦ 특수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4/1, 10/1 기준 현재 대학에 등록 (연구생 등록 포함)해야 함 ◦ 사업 중간에 휴학, 제적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
| 2) 연한 | 입학 후 석사 2년, 입학 후 박사 4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 : 입학 후 2년이상, ◦ 박사 : 입학 후 4년이상, ◦ 통합 : 입학 후 6년이상 ※ 단, 기간 산정시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자 미발견으로 인해 기 지급된 연구장학금 전액 환수 ◦ 매년 4/1, 10/1기준 참여학생 수 조정 또는 대체 |
| 3) 전일제 | 다른 직업 없이 주 40시간 이상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에 취업한 경우 ◦ 4대보험이 가입된 비전일제인 경우 (다만, 지침 제1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며 교육연구단이 소명을 한 대학원생은 예외로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

(참고)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관련 비전일제 학생 기준

| 구분 | 비전일제 기준 | 조치사항 |
|----------------|----------------------------------|--|
| 자격증/명의대여 | 매년 4/1, 10/1 기준 자격증/명의대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명의대여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 매년 2번의 기준일에 자격증/명의대여자로 판명된 경우 자격증/명의대여 상태에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교육연구단 사업비 삭감 가능 |
| 고등교육법상 (행정) 조교 | 매년 4/1, 10/1 기준 4대보험이 가입된 (행정)조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 신분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 매년 2번의 기준일에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로 판명된 경우 조교 신분 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교육연구단 사업비 삭감 가능 |

| | | |
|-----------|------------------------------------|---|
| 시간강사 | 매년 4/1, 10/1 기준 학기당 6학점 초과 시간강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는 4대보험 가입자는 참여대학원생 불인정 ◦ 매년 2번의 기준일에 학기당 6학점 초과 시간강사로 판명된 경우 시간강사 기간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교육연구단 사업비 삭감 가능 |
| 타 프로젝트 참여 | 교육연구단의 장 승인 없는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당해 회사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 벤처기업, 연구실 등의 연구원으로 위촉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연구단의 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전일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

제 11조(참여대학원생 변경)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 12조(참여대학원생의 변경)에 준용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2조(참여대학원생의 변경)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연구단의 장의 변경 조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지침 제11조에 의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교육연구단의 장은 대학 본부(산학협력단)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제 12조 (지원대학원생 자격 및 장학금)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 13조(지원대학원생)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의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기준을 준용한다.

②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은 지원대학원생과 미지원대학원생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학원생: 참여대학원생 중 BK21 FOUR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
2. 미지원대학원생: BK21 FOUR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지원받지 않는 대학원생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3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미래인재양성사업의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연구단, 혁신인재양성사업의 교육연구단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수의 70%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없다.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

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00만 원 이상

③ 교육연구단의 장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전문기관에 구축된 DB시스템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④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정 수준의 경쟁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4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 기준은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에 정하여 지급한다.

②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00만 원 이상

③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최소한 1개 학기 이상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자퇴·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 발생 시 교육연구단의 장 승인을 받아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비로 간주되므로, 동 사업 훈령 제29조제8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하나, 교육부 「글로벌 박사양성사업」 등 BK21 사업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⑥ 그 외에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인재양성사업의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연구단과 혁신인재양성사업의 교육연구단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수의 70%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없다. 미래인재양성사업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연구팀과 인문사회 분야의 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한다.

2.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실적 등을 판단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지급 기준은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연구장학금은 학생별 개인계좌 입금, 장학증서 교부 및 학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며 연구장학금 성격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제 13조(참여대학원생의 선발) ① 참여대학원생은 직전학기 또는 학부 학업성적 3.0점(4.3만점) 이상 또는 논문실적 40점 이상인 학생 중 참여교수가 추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추천받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자격기준 적격 여부, 학술활동 등을 평가하여 장학금 지원대학원생과 미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에서 요구하는 관련 구비서류를 4월과 10월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조(참여대학원생의 의무)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의 학술활동에 관한 정보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본 교육연구단에서 주최하는 모든 연구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조(참여대학원생 성과급) ① 참여대학원생들이 국외 SSCI, SCI(E), 국내 등재(후보)지에 해당되는 학술지에 참여교수와 함께 논문을 게재한 경우 성과급을 지원한다.

② 성과급 수혜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은 교육연구단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6조(학위논문 연구지원금) ① 참여대학원생 중 석·박사수료생을 대상으로 학위논문 연구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대학원 종합시험을 통과한 석·박사수료생 중 논문의 자료조사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은 교육연구단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7조(대학원생 간 공동연구 지원) ① 대학원생 간의 협력이 필요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참여교수는 연구지도 차원에서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로 참여가능하다(1저자로는 참여 불가).

③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은 교육연구단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8조(졸업생-재학생 간 취업 멘토링 지원) ① 취업상담 및 진로개발을 위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졸업생을 초청하여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해 확대, 선후배 간 유대관계 강화를 도모한다.

②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은 교육연구단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9조(참여대학원생 관리) ① 교육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의 자격, 의무, 장학금, 교육 및 학술활동 등에 대하여 관리한다.

제 5 장 신진연구인력

제 20조(신진연구인력)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

침」 제 14조(신진연구인력)를 준용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 14조(신진연구인력) ① 대학의 장 및 교육연구단의 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한다.

② 박사후과정생(리서치 펠로우를 포함한다)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학의 장은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학교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단,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③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학의 장은 계약교수에게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⑤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외강의를 위해 외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이중 소속을 허용한다.

1.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 제 21조(신진연구인력의 임용)** ① 신진연구인력의 근로여건은 교내 산학협력단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채용된 신진연구인력은 산학협력단에서 요구하는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진연구인력의 급여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의 신진연구인력 지원비 기준을 준용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제14조의2(산학협력 전담인력)** ① 대학의 장 및 교육연구단의 장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채용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한다.
-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③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④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 ⑤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실습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산업체 운영 등 교육·실습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영리행위는 제외한다.

제 6 장 산학협력 전담인력 및 해외학자

- 제 22조(산학협력 전담인력)**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 14조의2(산학협력 전담인력)과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6조(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를 준용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 제14조의2(산학협력 전담인력)** ① 대학의 장 및 교육연구단의 장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채용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한다.
-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⑤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실습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산업체 운영 등 교육·실습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영리행위는 제외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6조(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고용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

② 급여는 채용 인력의 전문성, 대학 자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퇴직금 및 인건비에 대한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개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집행하며, 퇴직금 총당 및 지급 절차는 신진연구인력 인건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23조(해외학자)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4조의3(해외학자)를 준용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4조의3(해외학자) ①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교육연구단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③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제 7 장 연구활동비 집행 및 관리

제 24조(예산집행) ①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학술논문 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29조(사업비 지출항목), 제39조(사업비 집행 관리), 별표3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및 별표4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2018. 5)」,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내규」를 준용하여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교수 및 대학원생들도 상기 ①항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25조(국내 학술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 지원) ①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저자로 표기된 국내학술논문 게재에 대하여 게재료와 심사료를 지원한다. 단, 타 기관과 연세대학교가 이중표기되어 있는 경우 지원금액의 50%만 지원한다.

②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에서 지원한다.

③ 논문 저자소개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소속임이 표기되어야 한다.

④ 해당 학회로부터 게재료 안내를 받으면 이를 교육연구단에 보고하고 교육연구단은 해당 학회로 해당 금액을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참여대학원생이 선지불 후 교육연구단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BK21 FOUR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교수 및 대학원생들도 상기 ①항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은 교육연구단 운영세칙에 따른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7조(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①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는 참여인력의 논문게재료,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가(일회성 참가비에 한하며, 학회 종신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학회 후원금 성격의 금액 집행 불가)비용,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로 사용 할 수 있다.

② 실험실습과 관련하여 당해 교육연구단의 연구 수행과 관련한 각종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S/W구입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 및 시설비,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③ 교육연구단은 산학협력과 관련된 창업 및 취업지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비 등 관련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 26조(국제 학술논문 투고 지원) ①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과 참여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저작하는 학술논문을 국제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영문교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정부 또는 민간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어 연구사업 사사를 표기한 논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연구 활동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에서 지원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9조(교육연구단 운영비)

4. 학술활동지원비는 전문가 초청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정보수집비로 집행할 수 있다.

- 전문가 초청 자문료는 원고료, 강사료 및 위원 수당 등으로 대학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연구단 내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에 대한 번역료, 자문료 및 원고료 등은 지급할 수 없다. (동일 학과(학부제 운영대학의 경우 동일 학부) 소속 전임 및 겸임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에게도 지급할 수 없다.)

- 사업 관련 문헌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 해당 도서는 전부 대학에 귀속하여야 한다.

- 사업 및 연구수행과 무관한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 국외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해외 출장 경비 등은 집행할 수 없다.

③ 논문 저자소개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소속임이 표기되어야 한다.

④ BK21 FOUR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교수 및 대학원생들도 상기 ①항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은 교육연구단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7조(국내 학술대회 발표) ①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저자로 표기된 국내 학술대회 구두 논문 발표, 포스터 발표 및 참가에 대하여 출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수도권 외 지역의 출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단, 논문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 시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다.

③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운영비 중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항목에서 지원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별표4】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

| 구 분 | 집행 기준 | 비 고 |
|--------------|---|--|
| 1.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사과정생 월 70만원 이상 박사과정생 월 130만원 이상 박사수료생 월 100만원 이상 | -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대학 및 교육연구단별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
| 2.신진연구인력 인건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300만원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퇴직금 및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한 액수임 리서치펠로우에 대한 인건비는 관련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집행 가능(최소기준 미적용) |
| 3.산학협력전담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대학 지급기준에 따름 | - 전임교원 인건비로는 지급 불가 |

| | | | |
|----------------------|---|--|--|
| 인건비 | | | |
| 4. 교육과정 개발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개발비 • 사례조사비 및 실험비 등 | - 교육과정 개발 관련제한 경비를 편성·집행 | |
| 5.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게재료 • 국내 학회, 세미나 참가비 • 소모성 재료비 • 창업, 취업지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 경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 연회비 등 참여 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제한 - 기자재 및 장비 구매비 집행 불가 | |
| 6. 국제화경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장·단기 해외 연수 경비 • 해외학자 초빙, 국제학술회의 참가비용 • 해외특허 출원(등록)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여부 및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단기 해외연수 지양 - 해외학자 초빙·활용경비는 해외학자의 국내 실 체류기간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하며, 주관대학의 전문가 활용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체재비 및 항공료 등 지원 | |
| 7. 교육연구단운영비 | ○인건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단계 BK21 사업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한 교육연구단 소속직원 인건비 | - 퇴직금 포함 |
| | ○성과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되, 1인당 연 4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평가를 통하여 지급) - 급여 성격의 성과급 활용 불가(정기적 지급 등) |
| | ○국내여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 인원의 국내 여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대학 여비규정 준용(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해외 학술회의 참가 등에 필요한 국외 여비 등은 국제협력 경비에서 집행 |
| | ○학술활동 지원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초청 자문료·원고료 - 도서 등 문헌 구입비 - 국내외 정보 수집비 등 | - 참여 교수에 대한 정책 연구비, 교재 개발비, 자문료, 원고료 등의 지급 제한 |
| |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 |
| | ○일반수용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비,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제한 |
| | ○회의및행사 개최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비, 각종행사경비, 식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교수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한 - 회의비 집행 시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 구비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의 항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교육연구단에서 적정한 집행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
| 8. 간접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의 교육연구단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의 편성 비율은 연간 사업비 총액의 5%를 넘을 수 없음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은 연간 사업비 총액의 2%를 넘을 수 없음 | |

④ BK21 FOUR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교수 및 대학원생들도 상기 ①항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은 교육연구단 운영세칙에 따르되 지원규모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2018. 5)」 [제5장 여비] 기준을 준용한다.

제 28조(국외 학술대회 발표) ① 국외 학술대회 발표의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

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34조(국제화경비)에 준용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34조(국제화경비) ① 사업비는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 해외특허 출원(등록), 국제 전시회 출품, 장·단기 해외연수, 해외 학자 초빙, 국제(학술)대회 개최(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포함), 국제 공동 워크숍, 산학협력 우수 기관 방문 등의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국제전시회 포함)는 교육연구단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2. 인문사회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3. 국제전시회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출품작 10편 이상,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4.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제외

③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사업 예산운영계획서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경비 집행을 허용한다.

④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단, 권위있는 국제전시회 출품은 국제학회 참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

2. 교수의 경우 제1호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4.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 총 3인 이내 가능

⑤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연수는 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집행 가능하다.

⑥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포함)을 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⑦ 30일 초과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②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국제화경비 중 단기해외연수 항목에서 지원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8조(국제화경비)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기간 15일 이내의 단기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학회 참여 및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를 지원하며,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전시회 출품활동도 지원할 수 있다.
2. 해당 대학 여비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항공료 및 여비, 수업료, 시설이용료 등을 집행할 수 있다.
3.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는 지침 제34조제2항에 따라 인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술대회(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석과 관련한 경비와 워크숍, 세미나 등의 단순 행사 참석목적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 과학기술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인문사회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국제전시회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출품작 10편 이상,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 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외

4.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논문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의 경우에는 총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국제 전시회의 경우 단순 참가는 지원할 수 없으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국제 전시회 출품·전시·시연하는 경우 1인에 한하여 동반 가능하다.

5.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여비(학회참가, 단기연수)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7. 해외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는 참여대학원생이 MOU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연수 대상 학생의 지도교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8.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예산운영계획서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③ 지원규모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2018. 5)」 [제5장 여비] 기준을 준용한다. 단, 당해 사업연도 국제화경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④ BK21 FOUR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교수 및 대학원생들도 상기 ①항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은 교육연구단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9조(장기해외연수) ① 참여대학원생 중 장기해외연수자를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34조(국제화경비),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2018. 5)」을 준용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34조(국제화경비) ⑦ 30일 초과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8조(국제화경비)

- ④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기간 15일을 초과하는 장기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항공료 외에 수업료, 숙박비(기숙사비 및 홈스테이 비용),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을 교육훈련비로 집행할 수 있다. 이 때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금액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 내의 체재비(필요한 경우에는 수업료를 별도로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해외인턴십 활동경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에 따른 국외 체재비를 지급한다.
 3. 장기해외연수 시에는 동반 교수와 관련한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③ 장기해외연수 후보는 참여대학원생 중 박사과정 4학기 이상 재학생 중 희망자로 하고, 희망자는 지도교수 추천서, 학술활동보고서, 연구계획서,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선발 및 기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사항목을 종합평가하여 장기해외연수자를 선발한다.
- 2. 심사항목은 희망분야, 희망기관, 준비정도, 연수계획, 연수능력 등으로 구성한다.
- ④ 해외연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 또는 취소되며,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교육연구단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때
 2.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3.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4.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5. 선정 이후에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6. 연구 진행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7. 관리지침(연수계획서 포함)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8. 기타 사유로 연구자가 더 이상 해외연수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 ⑤ 장기해외연수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수진행 보고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
1. 착수보고서: 연수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2. 진도보고서: 연수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귀국보고서: 연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기타보고서: 교육연구단에서 요구시 수시 제출
 5. 결과보고서: 연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⑥ 장기해외연수자는 연구결과를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 30조(해외 현장실습 지원) ① 대학원생을 창의 융합 사회복지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해외 및 국내의 다양한 실습지를 개발하고, 해외에서 실습을 하는 대학원생에게 체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 현장실습 후보는 참여대학원생 중 실습 과목 수강생으로 한다.

③ 선발 및 기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사항목을 종합평가하여 해외 실습 지원자를 선발한다. 심사항목은 희망분야, 희망기관, 준비정도, 실습계획, 실습능력 등으로 구성한다.

④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34조(국제화경비),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2018. 5)」을 준용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34조(국제화경비) ⑦ 30일 초과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8조(국제화경비)

④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기간 15일을 초과하는 장기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항공료 외에 수업료, 숙박비(기숙사비 및 홈스테이 비용),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을 교육훈련비로 집행할 수 있다. 이 때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금액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 내의 체재비(필요한 경우에는 수업료를 별도로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해외인턴쉽 활동경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에 따른 국외 체재비를 지급한다.
3. 장기해외연수 시에는 동반 교수와 관련한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은 교육연구단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31조(기타 국제화경비)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34조(국제화경비),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2018. 5)」을 준용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8조(국제화경비)

⑤ 해외학자의 초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 등 여비, 체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지급 기준은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
2. 해외학자 초빙은 그 목적 및 계획, 해당 학자 이력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 기안 후 시행하며, 활용 완료 후 세부 활용내역,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외학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강의 및 세미나 발표 등의 강사료,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출장비 산정 기준의 초과분 또는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비용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4. 해외학자 강사료는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되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대학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단의 사업 신청서 또는 연차별 예산 운영계획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외 기관과 온라인 강의 및 수강에 대한 관리 주체 및 체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학자의 원격 화상강의료,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6. 해외학자 초빙·활용과 관련한 경비는 실제 활용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계획과 무관한 집행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⑥ 기타 교육연구단 국제화와 관련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단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국제학술행사를 포함한다.) 경비(회의장 대여료, 행사개최비, 회의비, 다과비, 인쇄비 등)를 집행할 수 있다. 단, 국제학술대회를 해외에서 개최하는 경우 3항에 따른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참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지원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제3항과 같다.
3. 해외 특허 등록 및 출원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⑦ 대학의 장 및 교육연구단의 장은 출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항공료지급영수증(Invoice, E-ticket, Boarding Pass, 법인카드명세서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및 출장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여부 및 규모는 운영위원회의 심사와 교육연구단장의 승인 하에 집행한다.

제 8장 교육연구단 운영비

제 32조(교육연구단 운영비)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35조(교육연구단 운영비),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9조(교육연구단 운영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2018. 5)」을 준용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35조(교육연구단 운영비) ①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 총액의 10% 또는 5,000만원(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의 경우 25% 이내) 이내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별표3에 의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인건비, 여비, 학술활동 지원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된다.

③ 참여교수에 대한 월정액 보직 수당은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④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교육연구단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효율적 사업추진과 연구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연구단 운영비에서 성과급 경비를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교수 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9조(교육연구단 운영비) ①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사업비 총액의 10% 또는 5천만원(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의 경우 25% 이내)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동 사업 훈령 및 지침에 의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인건비, 성과급, 국내여비, 학술활동지원비,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 및 행사개최비, 기타로 나누어 집행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는 교육연구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되며, 퇴직금 및 인건비, 4대 보험 관련 경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2.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원된다. 이 때 참여교수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규정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비에서는 1인당 연 480만원(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24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급여 성격의 성과급(정기적 지급, 고정급 지급 등)은 집행할 수 없다.(신진연구인력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또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국내여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인력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학술활동지원비는 전문가 초청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정보수집비로 집행할 수 있다.

- 전문가 초청 자문료는 원고료, 강사료 및 위원 수당 등으로 대학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연구단 내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에 대한 번역료, 자문료 및 원고료 등은 지급할 수 없다. (동일 학과(학부제 운영대학의 경우 동일 학부) 소속 전임 및 겸임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에게도 지급할 수 없다.)

- 사업 관련 문헌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 해당 도서는 전부 대학에 귀속하여야 한다.

- 사업 및 연구수행과 무관한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 국외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해외 출장 경비 등은 집행할 수 없다.

5.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는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비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참여대학원생 등 개인 명의의 특허 출원·등록비용은 집행할 수 없다.

- 대학의 장 및 교육연구단의 장은 4단계 BK21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유지 또는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 4단계 BK21 사업 수행을 통한 연구과제물 보고서의 판권, 교육과정 개편 또는 산학협력을 통한 각종 결과물 판권 외 각종 유형적 발생품의 관리는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 지적재산권은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유로 하며, 지적재산권 사용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교육연구단과 산학협력단 합의하에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홈페이지 개설, 플래카드, 브로슈어 제작 등 포함),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4단계 BK21 사업과 무관한 물품 구입 비용, 언론기사 게재료 및 광고(신입생 모집 공고 등 포함) 비용은 집행할 수 없다.

7. 회의 및 행사개최비는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 교육연구단에서 개최하는 회의 및 각종 행사의 회의비, 다과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연구비 카드를 통해 집행하며, 행사 일시·장소·참석자 및 회의내용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한다.

- 교육연구단 내부 구성원에게는 회의 수당 등의 개인적 경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행사와 관련 없는 식대, 행사와 관련이 있더라도 행사 당 1회를 초과하는 식대는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종일 행사 등 행사기간 및 일정 상 부득이한 경우 행사의 목적, 참석대상, 세부일정, 소요 경비 등을 포함한 사전기안(사전 내부결재 필수)에 따라 추가 식대 집행이 가능하다.

- 주말 및 자정(24:00) 이후에는 회의비를 지출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 사유서를 첨부하여 교육연구단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할 수 있다.

[회의비를 집행할 수 없는 부당사례]

○ 회의장소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 회의비를 집행하여 그 사실관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출장 중인 참여교수 등을 회의록상의 참석자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의 회의비를 청구하는 경우
- 동일한 일시에 회의비를 수차례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회의비를 청구하는 경우
- 식당 장부 등을 방법을 사용하여 식대를 일정 금액 선결제 한 후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 간이영수증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증빙으로 회의비를 청구하는 경우

8. 그 외에 우수논문경진대회 등 교육연구단 내 행사를 통해 지급되는 일회성 포상금, 자체평가 시 외부위원으로 활용되는 전문가 초청 필요 경비 등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타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대학 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사업비 집행여부 및 규모는 교육연구단장의 승인 하에 집행하여야 한다.
- ③ 참여교수 성과급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금액은 교육연구단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33조(기타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활동 지원) ①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개별 연구활동비의 지급 외에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학술대회, 세미나, 특강 등의 학술활동의 개최 및 진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술대회, 세미나, 특강 등 학술활동 지원비는 교육연구단 운영비 중 회의 및 행사개최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 9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 34조(사업수행 점검 및 평가)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 4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준용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 4 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16조(수시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사업비 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 직접 면담을 하거나, 신진연구인력(박사후과정생, 리서치펠로우, 계약교수)-산학협력 전담인력 및 해외학자의 근무 장소를 방문하는 등 사업수행 현장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 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자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중대한 과실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
2. 총 사업기간 동안 경미한 사유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사례가 3회 이상 반복 지적(전문기관 이외에 타 감사기관 지적 사항 포함)

3. 제30조에 따른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 ③ 경미한 부당집행 및 규정위반 건이라 하더라도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에 걸쳐 유사 사례가 나타나는 등 별도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으며, 부당집행에 따른 삭감액은 부당집행금액의 200% 이내로 한다.
-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제20조의2에 따라 참여인력 또는 대학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한다.

제17조(개선 및 보완조치 요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의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교육연구단의 장에게 사업비의 한시적 집행 정지 등을 포함한 개선 및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교육연구단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연구단의 장이 보고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각종 평가 및 사업비 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자체평가)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교육연구단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연구단의 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교육연구단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컨설팅) ①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연구단의 사업 운영 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 ② 컨설팅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연차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원 혁신지원 대학의 대학원 혁신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 ② 대학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연차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이행사항 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인재 양성사업 수행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선정 교육연구단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 ② 이행사항 점검 결과 미이행 교육연구단은 협약을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중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② 미래인재 양성사업은 2023년과 2026년에 2차례의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2023년 실시 1차 중간평가 결과 하위 30% 교육연구단과 신규 진입 교육연구단의 재평가를 통해 2024년 이후 지원 교육연구단을 재선정하고, 2026년 실시 2차 중간평가를 통해 교육연구단의 사업비를 조정한다.

③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2024년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중간평가 결과 하위 30% 교육연구단과 신규 진입 교육연구단의 재평가를 통해 2025년 이후 지원 교육연구단을 재선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시행 전년도말까지 중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보고서에서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자료 등 부정이 있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해지,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교육연구단과의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교육연구단을 선정할 수 있다.

제23조(종합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7년간의 사업운영 성과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필요 시 2차 중간평가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시기는 후속사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연구단은 7년간의 사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제기) ① 지원 대학의 장은 점검 및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점검 및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다만, 협약해지 또는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30일 이내로 한다. 또한,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4단계 BK21 사업총괄관리위원회를 통해 그 처리방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제25조(자료 등의 요청)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교육연구단 및 대학원 혁신에 대한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교육연구단 및 대학원혁신 관련자의 출석 요구
3. 교육연구단 및 대학원에 대한 현지방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학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2.31.)

제 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